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하수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52호, 2021.1.5. 공포, 2021.7.6. 시행)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, 법률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환경부령 제 호
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이”를 “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“환경부령으로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호 중 “경우를”을 “경우는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그 밖에 환경부령이”를 “환경부령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신고하여야”를 “신고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해야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4조제4항”을 “법 제34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24조”를 “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”로, “철거신고를”을 “해체 허가신청을”로, “건축물철거신고서”를 “건축물의 해체 허가신청서”로 한다.

제29조제3호 중 “폐놀류”를 “폐놀류”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9조제6항”을 “법 제39조제7항”으로, “지정하여야”를 “지정해야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환경부령이”를 “환경부령으로”로, “재활용하고자 하는

자”를 “재활용하려는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부령이”를 “환경부령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2조(재활용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) 법 제44조제4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별표 8과 같다.

제43조제1항 중 “법 제44조제4항”을 “법 제44조제5항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, “법 제44조제4항”을 “법 제44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1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”을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나목 I 지역의 범위란 라목 중 “「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별표 3 비고 제8호 지역란 중 “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

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”을 “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”으로 한다.

별표 10 제2호바목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45조제7항”을 “법 제45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6서식 앞쪽 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“「수도법 시행령」”을 “「하수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중 “「하수도법」 제39조제6항”을 “「하수도법」 제39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중 “「하수도법」 제44조제4항”을 “「하수도법」 제44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) <u>법 제6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”</u>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	제2조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) <u>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“환경부령으로</u>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(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) <u>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</u>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공공하수처리시설·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[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(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<u>경우를</u> 제외한다)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 2. ~ 6. (생략)	제5조의2(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는</u> ----- ----- ----- 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등) ① <u>법 제34조제1</u>	제26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등) ① -----

항제4호에서 “ <u>그 밖에 환경부령이</u>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2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·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<u>신고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<u>확인하여야</u> 한다.	----- <u>환경부령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고해야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<u>확인해야</u> -----.
제28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) ① <u>법 제34조제4항</u>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	제28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) ① <u>법 제34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· 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제출해야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,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,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·확인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해야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1조(재활용의 변경신고 등)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“ <u>환경부령</u> 의 정하는 중요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41조(재활용의 변경신고 등) ① ----- <u>환경부령</u> <u>으로</u>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출해야 -----.
제42조(재활용시설의 설치·관리	제42조(재활용시설의 설치·관리

기준)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.	기준) 법 제44조제4항에서 “ <u>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</u> ”이란 별표 8과 같다.
제43조(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)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43조(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) ① 법 제44조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출해야 -----.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확인해야 -----.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<u>아니</u> 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제5항----- -----

다.	--.
제66조(휴업·폐업·재개업의 신고) ①법 제56조에 따라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(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, 분실·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)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66조(휴업·폐업·재개업의 신고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출해야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	② ----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 출해야 -----.

서장에게 송부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해야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